

심 의	제 2 회
년 월 일	2015. 4. 28 .

2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안건 목차

청렴시민감사관회의 안건

청렴시민감사관 회의

보고안건

<제1호> 2015년도 1분기 외부감사 수감 현황2

<제2호>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기본방향4

심의안건

<제1호> 2015년도 하반기 운영계획(안) 심의11

[참고자료]

미래부 14년도 공공기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



[보고안건 1호] 2015년도 1분기 외부감사 수감현황

1. 감사원 감사 수감

□ 개요

- 수감 분야 : 연구장비 구매계약 등 업무
- 일 시 : ' 15. 2. 26.~27. / 3. 2.~3. (4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원 (특별조사국) 감사관 3명

□ 주요 수감 내용

- 연구장비 구매계약 분야
 - 장비계약업체인 (주)○○○ 과의 구매계약 내역 검토
 - * 유압프레스 장비 등의 입찰, 계약 관련 서류 검토
- 위 연구장비 관련 연구과제 검토
 - 관련과제의 사업계획서, 장비도입심의자료 등 검토
 - * 보조금·출연금분야 감사일환으로 출연금분야의 연구장비구매내역등 검토

□ 지적사항

- 해당없음

2. 미래부 기술료 감사 수감

□ 개요

- 감사사항 :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·배분 실태 (특정감사)
- 감 사 관 : 미래부 감사담당관실 감사관 3명
- 감사기간 : ' 15. 3. 17. ~ 4 3, 4 21 (15일간)

□ 주요 수감 내용

-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
 - 기술료 수입금 (원 흡수분) 집행의 적정여부 등 검토
- 기술료 연체 관리
 - 기술료 계약시 연체료를 받도록 약정후 연체료 미징수
- 기술료 인센티브 1인 지급 건 적정 여부
 - 1인 지급 건, 사유 및 관련자료 검토
-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미지급
 - 기술료 수익금 중 기술이전 기여자 지급분 (5%) 집행 적정여부
- 연구원 창업 기술료 징수 업무 등
 -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, 연구원 창업 기술료 징수현황 등 검토
-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·등록건에 대한 직무발명여부 현황조사
(본 감사 실시전 2회 (15.4.9./15.4.13.)에 걸쳐 현황자료 제출)

□ 기타 사항

- 감사결과 : 미래부 처리 중 (5월 후반 경 감사결과 통보 예정)

[보고안건 2호]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기본방향

I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

-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기반 구축, 부패행위자 처벌 이행실태 점검,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, 신고자 보호수준 강화,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등을 집중평가 함으로써 **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**
 - 수범사례 환류 강화를 위한 **우수사례 도입 실적**을 평가
- 각급 기관들에게 부패방지시책 추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**평가대상 기관을 조기에 확정·통보**
- 전년도 **부진기관 및 신규기관**에 대해서는 **설명회 개최 및 사전컨설팅 제공**을 통해 반부패·청렴 기반 구축 지원

<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야별 개선 방향 >

구분	개선 방향
평가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반부패 선도역할이 중요한 기관, 부패사례 발생기관 등 주요 기관 평가에 집중 ▪ 일정규모 이상의 국·공립대학병원 등 평가 실시
평가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반부패·청렴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등 기구축된 제도에 대한 이행 노력 평가 ▪ 부패 이슈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
평가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평가기간 전 기간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 : 사전컨설팅 실시 등 -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 : 실적보고서 정확성 검증 등 ▪ 평가과정 전반의 시스템화 추진
결과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

II 평가 대상기관

□ 선정 기준

- 부패방지 시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기관은 포함하되,
 -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'14년도 보다 **대상기관을 확대** (254개 → **268개 기관**)
- 행정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
 - 반부패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, 평가결과가 **타 기관 평가에 활용되는 점** 등 고려
- 공직유관단체는 **인력 및 예산 규모, 업무 성격, 청렴도 결과, 부패사례 발생** 등을 기준으로 선정
 -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우선적으로 포함
 - 기관 규모는 작으나 **예산이 많고 부패유발가능성이 있는 업무**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 실시
- 리베이트 등 의료부패 빈발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**국·공립대학 병원** 등에 대한 **평가를 신규로 실시**
 - 국·공립대학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 검토
-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**평가지표를 변경 적용**
 -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'14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, 필요시 유형 변경 검토

□ 선정 시기

- 워크숍 (3월 중순)시 지표설명과 의견수렴 후 **평가지표 및 대상기관 선정** 등 실시계획을 **조기 확정 통보** ('15. 3월 말)
 - 평가계획 수립, 신규대상기관의 평가 준비기간 등을 고려
- 부패사례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시기와 상관없이 대상기관으로 선정, 관리 강화

Ⅲ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

□ 중점 평가내용

- 주요시책의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한 **반부패·청렴정책 이행력 확보**
 - **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** 방안 이행실태 점검
 - ※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·고발기준·의원면직 제한 적용,
 - **기관별 행동강령**에 대한 이행·점검 평가
 - ※ 외부강의 신고 등 행동강령 자체점검 실적 등
 - **제도개선과제** 등 이행·점검 평가 강화
- 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**공직자 청렴의식 제고**를 중점적으로 평가
 - 고위공직자 솔선수범, 청렴교육 이수 등
 - ※ 고위공직자 솔선수범(외부강의, 경조문화),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, 각 교육훈련 기간에 청렴교육 반영 비율 등
-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등 **신고자 보호 부문** 평가 강화

- 신고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 - ※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여부 및 내용의 구체화 정도 등

○ '부패방지 핵심 과제'에 대한 기관 특성별 개선노력 평가 강화

-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, 민생관련 부조리 척결, 불필요한 규제 정비, 예산낭비·누수 분야,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부패취약분야 개선
- 수범사례 환류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**우수사례 도입 노력**을 비중 있게 평가
 - **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** 관련 **제도·기반 구축** 평가
 - ※ 부정청탁 금지·관리 방안,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,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상 윤리성 확보 등
 - **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공통과제**에 대한 평가 강화
 - ※ 직위별·직무별 청렴행동 수칙, 청렴공직자 우대(승진가점 부여),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,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, 내부신고자 보호 등
 - 기관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도입 노력 평가
 - ※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근절, 공공부문 방만운영·예산낭비 근절,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, 불공정 관행 개선 등

□ 평가 방법

-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**평가과정 시스템화 구축 지속**
 - 제로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의제기 및 결과보고서 송부
 - ※ '14년도의 경우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단계까지 실행
- 단위과제별로 실적보고서에 대한 **서면평가**를 실시하고, **설문평가 및 통계자료의 이용도** 병행
 - 서면 평가는 위원회 **각 과제관리부서** 및 **외부전문가 평가단**에서 정성·정량 평가 병행 실시
 -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는 **공공기관 청렴도 측정** 결과를 활용

- 평가기간 전 기간에 대한 **이행실태 점검** 실시
 -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(~10월까지) : 전년도 부진기관 및 신규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**사전컨설팅** 위주의 현지점검 실시
 -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(11~12월) : 실적보고서 **정확성 검증**을 위한 현지점검 실시
 - 현지점검을 통해 실적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전년도 기준이상의 불이익 조치

-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
 - 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한 **피드백 강화**
 -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**각 기관에 전파**하고 TI 등 **국제평가 기관**에도 **홍보** 실시

IV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

-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**정부포상** 등 인센티브 부여
 -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**기관포상** 실시 및 **포상금** 지급,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
 -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**반부패 해외교육훈련**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
- 부패방지 사각지대 집중관리
 - 평가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**사전컨설팅** 제공
 - 실질적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**청렴도 측정**과 **부패방지 시책평가**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 강화
 - 취약한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평가시 **평가비중 확대** 등을 통해 **부패 취약부문이 개선될 때까지** 지속 관리
 -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**반부패 교육** 등 확대 실시

V 추진일정

- 제도개선 권고 관련 평가대상 과제 통보 ('15. 5월)
-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('15. 10월 초)
- 부패방지 시책 평가 ('15. 10월)
 - 1차 정량평가 : 10월 2째주
 - 2차 정성평가 : 10월 3째주
- 평가결과 이의제기 및 현장실사 ('15. 11월)
- 평가결과 통보 및 표창 ('15. 12월)

[심의안건 1호] 15년도 하반기 운영계획

1. 기본운영 전략

□ 주요 운영방향

- 연구원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의 개선 건의
-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제보
- 직원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행위의 제보
-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·부분감사 참여
- 각종 불편사항 신고 및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

2. 2015년도 하반기 운영계획

□ 하반기 감사관회의 운영계획

- 6월, 8월 2회 개최
(필요시 추가 개최)

□ 협동감사 부분참여, 공직기강점검 등에 공동참여

□ e-감사시스템 구축 및 활용시 자문

- 기관내부 인트라넷과 연계한 e-감사시스템 도입 및 활용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내부감사기능 강화 자문
 - 감사결재관리
 - 감사전자결재관리
 - 카드승인내역(감사)
 - 일별 근태현황(감사) 등
- 감사시스템 고도화 추진 목록 사전 자문
 - 회의비 지출현황
 - 법인카드 사용현황

<개선 건의 및 논의사항>